2018. 12.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 연구

Energetic Dangjin
당찬 당진

제 출 문

당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충남연구원 원장 윤황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당진시 현황 ····· 11

1. 당진시 일반 현황 ····· 13
2. 당진시 유형별 현황 ····· 25
3. 관련 계획 검토 ····· 37
4. 대 · 내외적 여건변화 ····· 60

제3장 기본구상 ····· 69

1. 계획의 비전 ····· 71
2. 추진전략 ····· 73

제4장 부문별 사업 ····· 77

1.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 79
2. 인권제도 정비 ····· 123

제5장 재정계획 ····· 133

1. 재정계획 ····· 135

표 목 차

[표 1]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조사 ····· 5
[표 2]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권감수성교육 ····· 6
[표 3]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2016년) ····· 14
[표 4] 당진시 인구 현황 ····· 15
[표 5]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16
[표 6] 당진시 여성 인구 현황 ····· 17
[표 7] 당진시 여성 가구주 현황 ····· 17
[표 8]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 18
[표 9] 당진시 장애인 인구 현황 ····· 19
[표 10] 당진시 외국인 인구 현황 ····· 20
[표 11]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현황 ····· 21
[표 12] 당진시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 21
[표 13]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
[표 14]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23
[표 15] 당진시 연령별 독거노인 현황 ····· 24
[표 16] 당진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25
[표 17] 당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26
[표 18] 당진시 여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 현황 ····· 27
[표 19] 당진시 보육시설 현황 ····· 28
[표 20] 당진시 문화공간 현황 ····· 29
[표 21] 당진시 의료기관 현황 ····· 30
[표 22] 당진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 31
[표 23] 당진시 주택유형별 가구 현황 ····· 31
[표 24] 당진시 학교 총 현황 ····· 32
[표 25] 당진시 공공도서관 현황 ····· 33
[표 26] 당진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34
[표 27] 당진시 범죄발생 현황 ····· 34

[표 28] 당진시 사업체 현황 ·····35
[표 29] 당진시 고용률 현황 ·····36
[표 30] 당진시 지역총생산 현황 ·····36
[표 31]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74

그 림 목 차

[그림 1] 노인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 6
[그림 2] 장애인분야 인터뷰(시각 · 지체 · 청각) ····· 6
[그림 3] 여성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 7
[그림 4] 다문화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 7
[그림 5] 아동 · 청소년분야 인터뷰 ····· 7
[그림 6] 여성분야 인터뷰 ····· 7
[그림 7] 비정규직분야 인터뷰 ····· 7
[그림 8] 당진시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인터뷰 ····· 8
[그림 9] 당진시 인권보장 및 실시계획수립연구 중간보고회 ····· 8
[그림 10]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연구 워크숍 ····· 9
[그림 11]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회 ····· 10
[그림 12] 당진시 위치 ····· 13
[그림 13] 당진시 행정구역 구성비 현황(2016년) ····· 14
[그림 14] 당진시 인구 추이(2009~2016년) ····· 15
[그림 15]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16
[그림 16] 사업 도출 체계 ····· 75
[그림 17] 사내하청의 계약 구조 ····· 108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016년 3월 30일 제정된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나. 연구의 목적

-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에서 제시된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함
- 기본계획에서 파악된 당진 인권취약계층의 실태를 바탕으로 당진시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을 개선함
- 당진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향후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
- 차별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당진시

▌시간적 범위

- 2019. ~2023.

▌내용적 범위

-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나. 연구의 방법 및 체계

▌인권취약계층 대상 심층인터뷰

- 인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인터뷰

▌사례 연구

- 다른 지자체 인권계획을 사례연구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있게 반영

다. 연구수립과정

▌ 설문조사 경과

- 설문지 작성 : 2017년 6월 28일
- 당진시민 : 353명(읍면동별 인구비례 배분)
- 인권취약계층 : 186명(노인 17명, 장애인 16명, 여성 36명, 다문화 여성 20명, 아동·청소년 43명, 비정규직 54명)

▌ 인터뷰조사 경과

- 11회, 8개 분야 130명

[표 1]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조사

분야	인원	일시	장소
노인	18명	2017.7.11.(화)	고대노인대학
장애인(시각)	14명	2017.7.13.(목)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지체,청각)	11명	2017.7.14.(금)	장애인복지회관
여성	38명	2017.7.20.(목)	당진시청중회의실
다문화	26명	2017.7.21.(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 · 청소년	5명	2017.8.1.(화)	당진 YMCA
비정규직	2명	2017.9.12.(화)	비정규직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4명	2017.9.21.(목)	당진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여성	8명	2018.11.1.(목)	여성의 전당
비정규직	2명	2018.11.9.(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2명	2018.11.9.(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	1명	2018.11.9.(금)	다문화지원센터

▌ 인권감수성교육 경과

- 4개 분야 4회

[표 2]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권감수성교육

분야	인원	일시	장소	인권교육 강사
노인	100명	2017.7.11.(화)	고대노인대학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
여성	38명	2017.7.20.(목)	당진시청 중회의실	김순영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인권강의센터장)
다문화	26명	2017.7.21.(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엄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 전문교육강사)
노인	40명	2018.11.1.(목)	합덕노인대학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

[그림 1] 노인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그림 2] 장애인분야 인터뷰(시각 · 지체 · 청각)

[그림 3] 여성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그림 4] 다문화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그림 5] 아동 · 청소년분야 인터뷰

[그림 6] 여성분야 인터뷰

[그림 7] 비정규직분야 인터뷰

[그림 8] 당진시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인터뷰

▌ 중간보고회

- 일시 : 2018년 11월 15일
- 참석자 : 인권위원
- 주요 내용
  - 인권문제 및 실태 점검
  - 인권사업 검토

[그림 9] 당진시 인권보장 및 실시계획수립연구 중간보고회

▌ 워크숍

- 일시 : 2018년 11월 28일
- 참석자 : 인권위원, 인권기관 및 인권시민단체, 사업부서 공무원
- 주요 내용
  - 인권사업 검토
  -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 인권기관·단체의 역할 협의

[그림 10]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연구 워크숍

▌ 당진시장 보고

- 일시 : 2018년 12월 10일
- 참석자 : 당진시장, 담당공무원
- 주요 내용
  - 인권 시정의 주요 방향 점검
  - 향후 당진시 인권시정의 주안점

▌ 최종보고회

- 일시 : 2018년 12월 19일
- 주요 내용
  - 인권사업 점검
  - 당진시 인권거버넌스 구축방향 및 역할

[그림 11]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회

제2장 당진시 현황

1. 당진시 일반 현황

2. 당진시 유형별 현황

3. 관련 계획 검토

4. 대·내외적 여건변화

1. 당진시 일반 현황

가. 위치 및 행정구역

▌위치

- 당진시는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 및 수도권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로부터 약 102km의 거리에 위치한 서해안 교통요충지임
- 수도권~충남~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통과지역이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통해 경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도 연결이 용이함
- 서해안 임해신산업단지의 배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아산만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해상 물류·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당진시는 충청남도 북부지방에 자리하여 동쪽으로는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서쪽으로는 서산시, 남쪽으로는 예산군과 서산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대체로 산악과 구릉이 연결된 넓은 평야지대로써 농업과 철강산업이 발전되고 있음
- 충청남도 내에서 당진시의 입지여건은 아산만권 개발의 거점,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로써 향후 대중국 교류의 거점이며, 서해안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충남의 북부권에 속해 있음
  - 당진시의 동쪽으로는 아산시, 서쪽으로는 서산시, 남으로는 예산군, 북으로는 경기도 화성시와 접하며 2읍, 9면 3동으로 구성됨

[그림 12] 당진시 위치

▌ 행정구역

• 당진시는 117년만의 승격에 따라 기존의 3읍 9면의 행정구역이 2012년 1월 1일부터 2읍 9면 3동으로 조정됨

[표 3]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2016년)

구 분	면적 (㎢)	구성비 (%)	통·리				반
			계	통	행정리	법정리	계
당진시	704.43	100	277	55	222	–	1,557
합덕읍	51.3	7.3	34	–	34	–	175
송악읍	80.8	11.5	31	–	31	–	190
고대면	63.33	9	18	–	18	–	89
석문면	103.35	14.7	19	–	19	–	78
대호지면	65.81	9.3	12	–	12	–	57
정미면	49.57	7	18	–	18	–	69
면천면	39.24	5.6	17	–	17	–	80
순성면	44.4	6.3	17	–	17	–	109
우강면	38.86	5.5	17	–	17	–	101
신평면	53.77	7.6	21	–	21	–	139
송산면	62.75	8.9	18	–	18	–	89
당진1동	6.03	0.9	16	16	–	–	128
당진2동	29.62	4.2	23	23	–	–	148
당진3동	15.6	2.2	16	16	–	–	125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그림 13] 당진시 행정구역 구성비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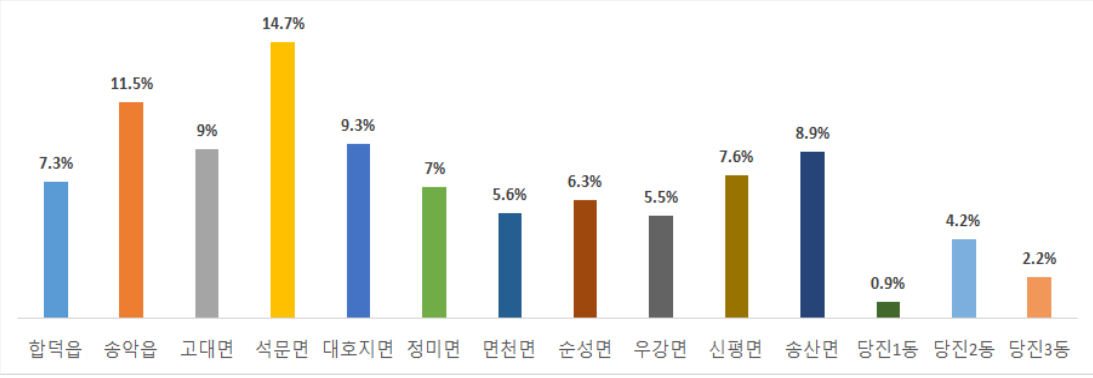

나. 인구

▌ 당진시 인구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당진시의 인구수는 166,630명, 세대는 73,434가구임
  - 남성 87,388명, 여성 79,242명임
- 당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138,798명, 2011년 150,219명, 2013년 159,615명, 2015년 165,122명, 2016년 166,630명으로 점차 증가함

[표 4] 당진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구			세대 (가구)	세대당 평균인구
	계	남	여		
2009년	138,798	71,405	67,393	58,907	2.36
2010년	144,903	74,720	70,183	62,076	2.33
2011년	150,219	77,703	72,516	64,333	2.34
2012년	155,104	80,427	74,677	66,369	2.34
2013년	159,615	82,925	76,690	68,490	2.33
2014년	162,844	84,963	77,881	70,502	2.31
2015년	165,122	86,454	78,668	72,074	2.29
2016년	166,630	87,388	79,242	73,434	2.27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그림 14] 당진시 인구 추이(2009~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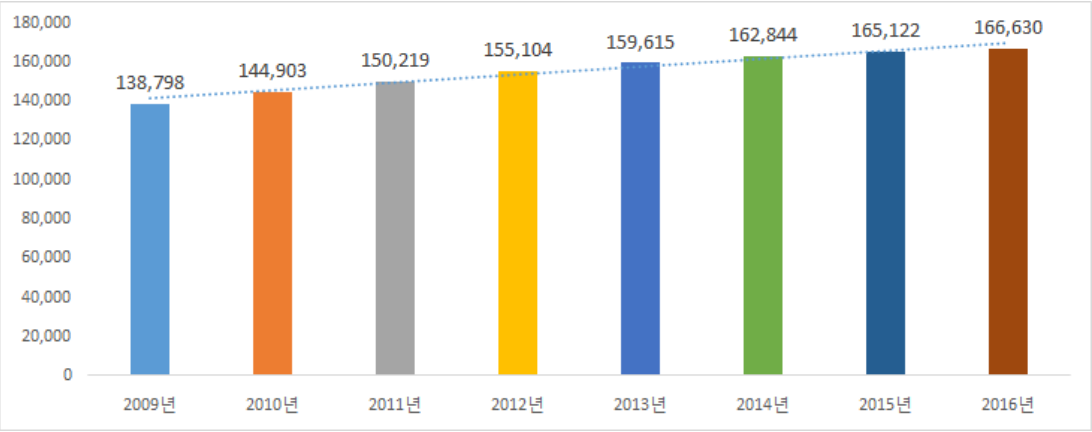

▌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2016년 행정구역별로 인구수를 살펴보면, 송악읍의 인구가 26,91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진1동과 당진2동의 인구가 각각 24,700명과 19,98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구			세대
	계	남	여	
당진시	166,630	87,388	79,242	73,434
합덕읍	10,055	5,278	4,777	4,864
송악읍	26,911	14,963	11,948	12,753
고대면	5,882	2,968	2,914	2,761
석문면	8,900	4,789	4,111	4,514
대호지면	2,605	1,303	1,302	1,286
정미면	3,803	1,880	1,923	1,936
면천면	3,723	1,890	1,833	1,781
순성면	5,518	2,837	2,681	2,516
우강면	5,768	2,931	2,837	2,486
신평면	17,302	8,811	8,491	6,987
송산면	12,354	6,870	5,484	5,705
당진1동	24,700	12,898	11,802	11,002
당진2동	19,980	10,230	9,750	7,952
당진3동	19,129	9,740	9,389	6,891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그림 15]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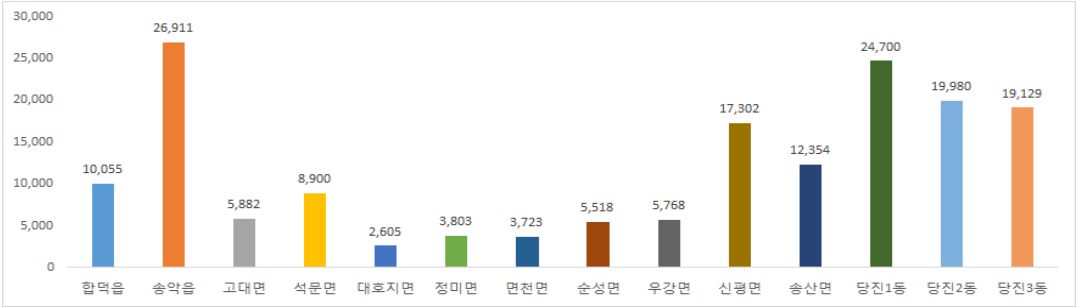

▌ 여성 인구

- 당진시 여성인구는 2014년 77,881명(47.8%), 2015년 78,668명(47.6%), 2016년 79,242명(47.6%)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6] 당진시 여성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당진시 인구			여성비율
	계	남	여	
2012년	155,104	80,427	74,677	48.1%
2013년	159,615	82,925	76,690	48.0%
2014년	162,844	84,963	77,881	47.8%
2015년	165,122	86,454	78,668	47.6%
2016년	166,630	87,388	79,242	47.6%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당진시 여성 가구주는 2010년 10,758세대(여성가구주 비율 20.63%), 2015년 15,041세대(여성가구주 비율 23.99%)로 증가하였음

[표 7] 당진시 여성 가구주 현황

(단위 : 세대, %)

연도	일반 가구수1)	여성가구주 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2)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10	52,151	10,758	–	–	–	–	20.63
2015	62,697	15,041	–	–	–	–	23.99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주 :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2)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B)/(A)*100

▌ 연령별 인구

- 당진시 0세부터 19세까지 전체 인구대비 아동·청소년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13년 22.7%, 2014년 21.3%, 2015년 21.0%, 2016년 20.6%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당진시 60세부터 85세이상까지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13년 19.9%, 2014년 21.0%, 2015년 21.7%, 2016년 22.2%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표 8]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2013		2014		2015		2016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계	159,615	100	162,844	100.01	165,122	100	166,630	100
0 ~ 4	11,158	6.99	9,537	5.86	9,571	5.80	9,230	5.54
5 ~ 9	7,807	4.89	8,333	5.12	8,754	5.30	9,057	5.44
10 ~ 14	8,363	5.24	8,010	4.92	7,524	4.56	7,387	4.43
15 ~ 19	8,854	5.55	8,792	5.40	8,851	5.36	8,700	5.22
20 ~ 24	8,180	5.12	8,620	5.29	8,703	5.27	8,639	5.18
25 ~ 29	10,136	6.35	9,326	5.73	9,361	5.67	9,469	5.68
30 ~ 34	13,677	8.57	13,542	8.32	13,108	7.94	12,309	7.39
35 ~ 39	12,913	8.09	12,903	7.92	13,276	8.04	13,909	8.35
40 ~ 44	12,894	8.08	13,247	8.13	13,339	8.08	13,060	7.84
45 ~ 49	11,572	7.25	12,544	7.70	12,580	7.62	13,182	7.91
50 ~ 54	12,516	7.84	12,491	7.67	12,455	7.54	12,078	7.25
55 ~ 59	9,820	6.15	11,259	6.91	11,791	7.14	12,590	7.56
60 ~ 64	8,130	5.09	8,265	5.08	8,956	5.42	9,575	5.75
65 ~ 69	6,355	3.98	7,000	4.30	7,647	4.63	7,891	4.74
70 ~ 74	7,060	4.42	6,719	4.13	6,530	3.95	6,281	3.77
75 ~ 79	5,560	3.48	6,306	3.87	6,077	3.68	6,082	3.65
80 ~ 84	2,841	1.78	3,544	2.18	4,019	2.43	4,460	2.68
85세 이상	1,779	1.11	2,406	1.48	2,580	1.57	2,731	1.64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장애인 인구

- 당진시 장애인 인구추이는 2015년 9,530명에서 2016년 9,671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2016년 장애인 인구 현황을 성별로 보면 남자 5,604명, 여자 3,926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
- 2016년 장애인 인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송악읍 1,378명, 신평면 1,087명, 당진2동 975명, 당진1동 919명 순으로 나타남

[표 9] 당진시 장애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읍면동	2013			2014			2015			201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9,397	5,554	3,843	9,475	5,600	3,875	9,530	5,604	3,926	9,671	5,707	3,964
합덕읍	865	512	353	871	514	357	870	512	358	852	496	356
송악읍	1,334	830	504	1,342	833	509	1,337	824	513	1,378	841	537
고대면	533	299	234	533	299	234	531	296	235	542	293	249
석문면	595	350	245	598	353	245	599	355	244	673	413	260
대호지면	227	136	91	231	136	95	226	133	93	228	135	93
정미면	362	214	148	365	214	151	374	227	147	380	234	146
면천면	378	209	169	373	204	169	371	201	170	366	198	168
순성면	523	314	209	533	312	221	543	314	229	515	298	217
우강면	518	298	220	511	290	221	511	284	227	512	298	214
신평면	1,094	643	451	1,083	634	449	1,082	637	445	1,087	643	444
송산면	586	341	245	615	363	252	628	357	271	624	358	266
당진1동	831	497	334	840	505	335	864	525	339	919	551	368
당진2동	917	541	376	943	560	383	959	560	399	975	584	391
당진3동	634	370	264	637	383	254	635	379	256	620	365	255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외국인 인구

- 당진시 외국인 인구는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901명, 2013년 4,306명, 2014년 5,048명, 2015년 5,137명, 2016년 5,240명으로 매년 점차 증가추세임
- 2016년 당진시 외국인 인구 현황은 지역별로 송악읍 1,383명, 합덕읍 746명, 당진1동 635명, 신평면 500명, 순성면 358명 순으로 나타남

[표 10] 당진시 외국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읍면동	계	남	여
2012	3,901	2,645	1,256
2013	4,306	2,897	1,409
2014	5,048	3,440	1,608
2015	5,137	3,468	1,669
2016	5,240	3,496	1,744
합덕읍	746	525	221
송악읍	1,383	993	390
고대면	92	68	24
석문면	154	89	65
대호지면	46	32	14
정미면	148	110	38
면천면	316	286	30
순성면	358	289	69
우강면	77	43	34
신평면	500	354	146
송산면	328	221	107
당진1동	635	307	328
당진2동	323	129	194
당진3동	134	50	84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 2,808명, 2013년 2,773명, 2014년 2,955명, 2015년 3,606명, 2016년 3,325명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당진시 결혼 이민자는 2012년 618명, 2013년 660명, 2014년 727명, 2015년 722명, 2016년 717명으로 2012년에 비해 증가 추세임
- 외국인 근로자는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음

[표 11]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2,808	2,421	387	618	27	591
2013	2,773	2,371	402	660	32	628
2014	2,955	2,525	430	727	40	687
2015	3,606	3,042	564	722	48	674
2016	3,325	2,851	474	717	57	66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6)

- 당진시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연도별로 2012년 94건, 2014년 80건, 2016년 68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당진시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도 2012년 18건, 2014년 11건, 2016년 0건으로 으로 감소 추세임

[표 12] 당진시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남편+외국인 아내	아내+외국인 남편
2012	94	18
2013	83	16
2014	80	11
2015	71	9
2016	68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2년 1,566가구, 2013년 1,518가구, 2014년 1,466가구, 2015년 1,560가구, 2016년 1,562가구로 점차 증가 추세임
-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는 2012년 92가구, 2013년 97가구, 2014년 141가구, 2015년 108가구, 2016년 131가구로 점차 증가하였음

[표 13]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가구수, 명)

연도별 읍면동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시설수	인원
2012	1,566	1,474	92	15	132
2013	1,518	1,426	97	14	117
2014	1,466	1,325	141	17	116
2015	1,560	1,452	108	17	132
2016	1,562	1,431	131	18	141
합덕읍	187	170	17	2	9
송악읍	225	209	16	3	25
고대면	66	64	2	3	15
석문면	95	88	7	–	–
대호지면	32	29	3	–	–
정미면	61	57	4	1	25
면천면	70	62	8	2	19
순성면	71	59	12	2	11
우강면	112	107	5	–	–
신평면	157	139	18	1	4
송산면	71	66	5	–	–
당진1동	149	139	10	2	2
당진2동	225	204	21	2	31
당진3동	41	38	3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25,975명, 2015년 26,843명, 2016년 27,445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2016년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남자 50%, 여자 69%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4]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읍면동별	전체 노인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명)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4	25,975	11,093	14,882	15,838	5,561	10,277	61	50	69
2015	26,843	11,443	15,400	16,460	5,798	10,662	61	51	69
2016	27,445	11,765	15,680	16,786	5,939	10,847	61	50	69
합덕읍	2,811	1,236	1,575	1,859	712	1,147	66	58	73
송악읍	3,420	1,511	1,909	1,825	634	1,191	53	42	62
고대면	1,935	822	1,113	1,278	465	813	66	57	73
석문면	2,064	886	1,178	1,186	400	786	58	45	67
대호지면	1,029	452	577	707	265	442	69	59	77
정미면	1,340	565	775	962	358	604	72	63	78
면천면	1,219	532	687	892	339	553	73	64	80
순성면	1,720	752	968	1,119	408	711	65	54	73
우강면	1,703	729	974	1,086	395	691	64	54	71
신평면	2,753	1,141	1,612	1,602	529	1,073	58	46	67
송산면	1,786	751	1,035	1,008	329	679	56	44	66
당진1동	2,142	912	1,230	1,130	377	753	53	41	61
당진2동	2,136	907	1,229	1,416	514	902	66	57	73
당진3동	1,387	569	818	716	214	502	52	38	61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독거노인

- 당진시 독거노인은 2015년 6,607명, 2016년 6,761명으로 다소 증가함
- 당진시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은 송악읍 911명, 합덕읍 704명, 당진1동 539명, 석문면 511명, 당진2동 507명 순으로 나타남

[표 15] 당진시 연령별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읍면동별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소계	65~79세	80세 이상
2015	6,607	4,620	1,987	512	335	177	6,086	4,005	2,081
2016	6,761	4,625	2,136	546	349	197	6,215	4,276	1,939
합덕읍	704	472	232	66	37	29	638	435	203
송악읍	911	671	251	77	55	22	845	616	229
고대면	450	301	149	15	14	1	435	287	148
석문면	511	358	153	21	11	10	490	347	143
대호지면	305	189	116	12	7	5	293	182	111
정미면	390	256	134	21	15	6	369	241	128
면천면	336	207	129	18	13	5	318	194	124
순성면	300	141	159	31	16	15	269	125	144
우강면	389	263	126	33	16	17	356	247	109
신평면	717	496	221	55	30	25	662	466	196
송산면	413	291	122	38	18	20	375	273	102
당진1동	539	432	107	50	41	9	489	391	98
당진2동	507	355	152	98	69	29	409	286	123
당진3동	278	193	85	11	7	4	267	186	81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2. 당진시 유형별 현황

가. 복지

▌ 노인여가복지시설

- 당진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3년 333개소(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12개소, 노인교실 19개소), 2016년 350개소(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29개소, 노인교실 19개소)으로 경로당 17개소가 추가로 개소됨
- 읍면동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송악읍 42개소, 합덕읍 41개소, 신평면 31개소, 당진2동 27개소 순임

[표 16] 당진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13	333	2	312	19
2014	341	2	320	19
2015	341	2	321	18
2016	350	2	329	19
합덕읍	41	1	37	3
송악읍	42	–	40	2
고대면	25	–	24	1
석문면	21	–	20	1
대호지면	14	–	13	1
정미면	20	–	19	1
면천면	19	–	18	1
순성면	21	–	20	1
우강면	25	–	24	1
신평면	31	–	30	1
송산면	22	–	21	1
당진1동	24	1	19	4
당진2동	27	–	26	1
당진3동	18	–	18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노인의료복지시설

- 당진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3년 15개소(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 2016년 18개소(노인요양시설 11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으로 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추가로 개소됨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7] 당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읍면동별	시설수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2	15	10	597	494	332	5	36	30	29
2013	15	9	613	563	358	6	54	47	25
2014	18	9	613	563	358	9	81	71	41
2015	18	11	710	622	426	7	63	57	44
2016	18	11	694	661	443	7	63	57	41
합덕읍	3	2	66	64	43	1	9	8	5
송악읍	3	1	200	200	127	2	18	16	12
고대면	3	1	48	48	33	2	18	17	12
석문면	–	–	–	–	–	–	–	–	–
대호지면	–	–	–	–	–	–	–	–	–
정미면	–	–	–	–	–	–	–	–	–
면천면	2	1	80	77	50	1	9	8	7
순성면	2	2	129	118	76	–	–	–	–
우강면	–	–	–	–	–	–	–	–	–
신평면	1	1	35	26	28	–	–	–	–
송산면	–	–	–	–	–	–	–	–	–
당진1동	2	1	22	22	13	1	9	8	5
당진2동	2	2	114	106	73	–	–	–	–
당진3동	–	–	–	–	–	–	–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여성폭력상담시설

- 당진시 가정폭력 상담소는 1개소이며, 상담건수는 2014년 1,479건, 2015년 1,201건, 2016년 1,341건으로 2015년 대비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증가하였음
- 당진시 성폭력 상담소는 1개소이며, 상담건수는 2014년 116건, 2015년 369건, 2016년 377건으로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18] 당진시 여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읍면동별	여성폭력상담					
	합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2012	2	1,408	1	1,319	1	89
2013	2	1,451	1	1,355	1	96
2014	2	1,595	1	1,479	1	116
2015	2	1,570	1	1,201	1	369
2016	2	1,718	1	1,341	1	377
합덕읍	–	91	–	68	–	23
송악읍	–	395	–	368	–	27
고대면	–	50	–	47	–	3
석문면	–	47	–	38	–	9
대호지면	–	15	–	11	–	4
정미면	–	28	–	26	–	2
면천면	–	17	–	12	–	5
순성면	–	58	–	47	–	11
우강면	–	65	–	34	–	31
신평면	–	35	–	28	–	7
송산면	–	92	–	69	–	23
당진1동	–	550	–	431	–	119
당진2동	2	171	1	117	1	54
당진3동	–	104	–	45	–	59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보육시설

- 당진시 보육시설은 2013년 170개소, 2014년 161개소, 2015년 161개소, 2016년 162개소로 2013년에 비해 2016년 8개소 감소하였음
- 읍면동별 보육시설은 송악읍 32개소, 당진3동 32개소, 당진1동 25개소, 당진2동 19개소, 송산면 12개소 순임

[표 19] 당진시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2013	170	7	–	75	9	3	76
2014	161	7	9	70	5	3	67
2015	161	7	9	71	5	4	65
2016	162	8	9	72	4	4	65
합덕읍	6	1	1	2	1	1	–
송악읍	32	1	1	12	2	–	16
고대면	3	–	2	1	–	–	–
석문면	5	–	–	4	–	1	–
대호지면	–	–	–	–	–	–	–
정미면	1	1	–	–	–	–	–
면천면	–	–	–	–	–	–	–
순성면	5	–	–	5	–	–	–
우강면	1	–	–	1	–	–	–
신평면	21	1	2	10	–	–	8
송산면	12	–	1	7	–	–	4
당진1동	25	1	2	9	–	1	12
당진2동	19	3	–	9	–	1	6
당진3동	32	–	–	12	1	–	19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문화시설

- 당진시 문화시설은 2016년 공공공연장 2개소, 영화상영관 4개소, 미술관 1개소, 종합복지회관 8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3개소 총 19개소임
- 읍면동별 문화시설은 2016년 당진1동 7개소, 송악읍 2개소, 면천면 2개소, 그 외 지역 1개소임

[표 20] 당진시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2016년)	합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 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영화 상영관	미술관	종합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전수 회관
합계	19	2	4	1	8	–	1	3
합덕읍	–	–	–	–	–	–	–	–
송악읍	2	–	–	–	–	–	–	2
고대면	1	–	–	–	1	–	–	–
석문면	–	–	–	–	–	–	–	–
대호지면	1	–	–	–	1	–	–	–
정미면	1	–	–	–	1	–	–	–
면천면	2	–	–	–	1	–	–	1
순성면	1	–	–	–	1	–	–	–
우강면	1	–	–	–	1	–	–	–
신평면	1	–	–	–	1	–	–	–
송산면	1	–	–	–	1	–	–	–
당진1동	7	2	3	1	–	–	1	–
당진2동	–	–	–	–	–	–	–	–
당진3동	1	–	1	–	–	–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의료기관

- 당진시 의료기관은 2013년 195개소, 2014년 192개소, 2015년 198개소, 2016년 198개소임
- 읍면동별 의료기관은 당진1동 100개소, 송악읍 24개소, 합덕읍 21개소, 신평면 14개소 순임

[표 21] 당진시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13	195	1	4	79	2	45	31	2	1	11	19
2014	192	1	4	77	2	43	32	2	1	11	19
2015	198	1	4	79	3	45	33	2	1	11	19
2016	198	1	4	79	3	45	32	3	1	11	19
합덕읍	21	–	1	10	–	5	3	–	–	1	1
송악읍	24	–	–	9	1	5	5	–	–	1	3
고대면	3	–	–	1	–	–	–	–	–	1	1
석문면	7	–	–	2		1	1	–	–	1	2
대호지면	2	–	–	–	–	–	–	–	–	1	1
정미면	3	–	–	–	–	–	–	–	–	1	2
면천면	3	–	–	–	–	–	–	–	–	1	2
순성면	4	–	–	1	–	–	–	–	–	1	2
우강면	3	–	–	–	–	–	–	–	–	1	2
신평면	14	–	–	5	1	3	2	–	–	1	2
송산면	7	–	–	1	–	1	–	3	–	1	1
당진1동	100	–	2	49	–	28	21	–	–	–	–
당진2동	5	–	1	1	1	1	–	–	1	–	–
당진3동	2	1	–	–	–	1	–	–	–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아동복지시설

- 당진시 아동복지시설은 2014년 9개소에서 2015년 1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입소자는 2014년 242명, 2015년 129명, 2016년 249명으로 최근 증가하였음

[표 22] 당진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생활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2	9	233	–	–	66	–	–	167	–	–
2013	9	287	–	–	32	–	–	250	–	–
2014	9	242	116	126	15	7	8	242	116	126
2015	10	129	75	54	123	65	58	252	130	122
2016	10	249	102	147	17	7	10	232	95	137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나. 주거

▌ 주거실태

- 당진시 주거실태는 2010년 52,151가구에서 2015년 62,654가구로 증가하였음
- 유형별로는 2015년 기준 자기집 39,369가구, 전세 가구 6,331가구, 보증부월세 9,301가구, 무보증월세 1,800가구, 사글세 539가구, 무상 5,314가구임

[표 23] 당진시 주택유형별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연도별	계	자기집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40,285	26,814	4,140	3,788	1,219	535	3,789
2010	52,151	31,854	7,698	6,678	1,313	383	4,225
2015	62,654	39,369	6,331	9,301	1,800	539	5,314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다. 교육

▌ 학교현황

- 당진시 학교수는 2011년 90개, 2013년 88개, 2017년 89개로 나타남
- 당진시 학생수는 2011년 23,804명, 2013년 24,036명, 2017년 25,983명으로 점차 증가함

[표 24] 당진시 학교 총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별 / 교육과정별	학교수	학급(과)수	보통 교실수	학생수		
				계	남	여
2011	90	786	720	23,804	12,378	11,426
2012	90	790	791	23,855	12,328	11,527
2013	88	828	801	24,036	12,399	11,637
2014	89	846	863	25,123	13,061	12,062
2015	89	880	907	25,446	13,278	12,168
2016	89	889	1,228	26,191	13,589	12,602
2017	89	906	1,226	25,983	13,468	12,515
유치원	36	87	87	1,696	852	844
초등학교	30	468	634	9,937	5,221	4,716
중학교	13	162	259	4,253	2,254	1,999
고등학교	8	153	246	4,602	2,370	2,232
일반계 고등학교	6	107	156	3,533	1,671	1,862
특수목적 고등학교	1	16	56	288	288	–
특성화 고등학교	1	30	34	781	411	370
대학	1	27	–	3,898	1,826	2,072
대학교	1	9	–	1,597	945	652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공공도서관

- 당진시 공공도서관은 당진중앙도서관, 합덕도서관, 송악도서관, 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4개임
- 도서 자료수는 2015년 258,851권, 2016년 270,007권, 2017년 299,858권으로 증가 추세임
- 연간 이용자수도 2015년 456,070명, 2016년 537,593명, 2017년 552,808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25] 당진시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 개, 권, 명, 천원)

연도별	도서관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자수	연간 열람책수	연간 대출책수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종)			
2011	4	1,110	216,188	5,955	140	134,776	424,172	282,828
2012	4	1,149	224,254	9,649	140	140,934	381,504	249,754
2013	4	1,149	237,937	7,018	126	461,425	426,067	276,780
2014	4	1,104	243,578	7,018	20	521,926	398,999	249,761
2015	4	1,372	258,851	16,162	173	456,070	338,605	214,232
2016	4	1,427	270,007	31,238	192	537,593	427,657	273,443
2017	4	1,387	299,858	9,856	238	552,808	414,070	265,859
당진중앙도서관	1	700	109,999	2,921	75	332,009	213,888	142,592
합덕도서관	1	150	45,300	1,486	16	36,992	25,674	17,116
송악도서관	1	177	54,405	1,461	22	71,703	67,495	44,997
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1	360	90,154	3,988	125	112,104	107,013	61,154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라. 사회안전

▌ 자살률

- 당진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2015년 40.5명에서 2016년 23.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25.3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26] 당진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단위 : 명)

연도별	자살률
2014	35.5
2015	40.5
2016	23.0
2017	25.3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7)

▌ 범죄

- 당진시 범죄발생건수는 2014년 5,158건, 2015년 5,470건, 2016년 5,498건으로 증가추세임
- 당진시 범죄발생 검거건수는 2014년 4,206건, 2015년 4,636건, 2016년 4,767건으로 증가하였음

[표 27] 당진시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2012	5,414	3,993
2013	5,364	4,050
2014	5,158	4,206
2015	5,470	4,636
2016	5,498	4,767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마. 산업

▌ 사업체

- 2016년 기준 당진시의 전체 사업체수는 12,279개로 도매 및 소매업이 3,004개(24.4%)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체별 종업원 수는 전체 77,078명 중 제조업이 29,120명(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8] 당진시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여성대표자	계	남	여
농업, 임업 및 어업	34	3	306	245	61
광업	8	–	72	65	7
제조업	1,170	208	29,120	25,843	3,2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	1,357	1,195	16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5	9	619	549	70
건설업	535	99	5,455	4,905	550
도매 및 소매업	3,004	1,264	7,555	4,105	3,450
운수업	1,059	90	3,366	3,025	341
숙박 및 음식점업	2,732	1,786	6,552	2,088	4,46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	12	418	277	141
금융 및 보험업	104	16	1,181	520	6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9	142	1,450	1,029	4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5	21	1,223	929	29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4	28	3,565	2,886	67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4	–	1,807	1,218	589
교육서비스업	439	238	3,626	1,503	2,1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5	191	4,577	720	3,8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4	162	980	507	4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71	564	3,849	2,549	1,300
계	12,279	4,833	77,078	54,158	22,920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7)

▌ 고용률

- 2018년 상반기 기준 당진시의 취업자 수는 약 99,000명으로 2014년의 90,000명 대비 약 9,000명 정도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2018년 상반기 70%로 2014년의 67% 대비 3% 정도 증가하였음

[표 29] 당진시 고용률 현황

(단위 : 천 명, %)

구 분	취업자		고용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14년	90	93	67	68
2015년	93	96	68	68
2016년	95	96	69	69
2017년	96	96	68	68
2018년	99	0	70	0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8)

▌ 지역총생산

- 당진시의 2015년 지역총생산은 12조 7,799억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GRDP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당진시의 GRDP는 2012년 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전체 GRDP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표 30] 당진시 지역총생산 현황

(단위 : 백 만원, %)

구 분	지역총생산	도대비 구성비
2012년	11,318,536	13
2013년	11,629,862	12
2014년	12,816,821	13
2015년	12,779,956	12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5)

3. 관련 계획 검토

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NAP)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 인권취약분야별 제3차 NAP에서 제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홍보 강화
  -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 마련
  -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보건복지부)
  - 시설 학대피해 노인보호 대책 마련
  - 인권교육, 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인권보호 교육 및 인권보호 제고
- 노인 건강권 보장 (보건 복지부)
  - 노인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 단체·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
-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 마련

-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 마련
- 노인근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장년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세스 개선
-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농지연금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 및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 신규가입자의 확대를 위해 농업인 회의·교육 시 현장설명회 실시,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밀착형 홍보와 언론매체 활용
- 연금가입 시 주요 의논대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상담 강화

▌장애인 보호

•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복지부)

-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강화 대책 마련
-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의 활성화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장애인 복지정책 예산 확충, 정책 수립
- 여성장애인 모성권·건강권 보호
-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강화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정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보건복지부)

- 장애등급제의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요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부)
  -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강화
  -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 일반학교 교직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보장 (보건복지부·법무부)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확대 방안 강구
  - 사법에의 접근 보장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
  - 장애인등급제 문제점 개선 검토
  -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 특수장비와 장애유형별 장비 구입 시 정부재정 지원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 관광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
  - 장애인 교육·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보건복지부·법무부)
  -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교육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여성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교육부·여성가족부·법무부)
  -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한 교육 내실화
  -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탈성매매 여성 보호·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 성매매 수요 감소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강화
  -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여성가족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감독 내실화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11. 25.~’ 12. 1.)에 여성폭력근절 캠페인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
  - 여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 생산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법무부)
  - 무단촬영·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신고의무 이행 제고
  - 권력 이용 성범죄 법정형 강화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인프라 확대
-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16년) 37개소 → (’17년) 38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사업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 전담의료기관, 의료비 지원확대,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동행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
-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 관리, 운영실태 조사 등 정기적 종합평가 실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지원 및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속적 확대 및 신속한 형사사건 법률지원 도모
-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료를 병행하는 근본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
- 구금 이후 출소한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속 추진

•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교육부)

- 학교 내 여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 건강 증진 강화 (보건복지부)

- 자궁경부암 예방
- 여성건강상담 지원

•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권익향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어업도우미 제도 개선 및 가사도우미 제도 시행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여성문화예술인의 경력단절 해소 및 가사·육아 부담경감 방안 연구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지속 운영 및 추가개소 추진

• 모·부성권 강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한부모가족 지원 및 차별 해소 (여성가족부)

- 각종 매체(인터넷, 라디오광고 등)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
- 차별경험 없이 신청 가능한 한부모 온라인 신청 추진·홍보 강화
-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 강화

▌아동 · 청소년 보호

• 학교 체벌의 금지 (교육부)

-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교육 현장에서 준수 추진계속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준수 홍보
- 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부·여성가족부)

-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확대
-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방안 마련 및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보급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여성가족부)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풍토 조성(교육부)

- 지식위주의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

-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교육부)
  - 학교단위 위(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속 확충
  - 위(Wee)센터 정신과 자문 의사 지정을 통한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우수 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 고도화
  -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설치·운영 근거 및 행정·재정적 지원 명시
-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교육부·여성가족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및 피해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피해 학생 치유 지원 및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강화
  -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관제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시범학교를 확대하고, 학교 신·개축 시 CPTED 적용 의무화(~’19년)
  - ‘SOS국민안심서비스’ 확대로 학생보호 강화
  - 초등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사회복무요원, 학교보안관 등)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추진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화해 도모를 위한 분쟁 조정 활성화
  - 민간단체 및 기업 중심의 분쟁 및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처합동 대책 마련 추진
  -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 스포츠 인권센터 운영
- 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소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 시간 허용 기준 마련(연령별 용역 제공시간 및 허용조건 등)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권역별 확충과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을 통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 온·오프라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구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실시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의 주된 통로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추진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

•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법무부)

-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비행예방교육 역량 강화

•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 인터넷중독 상담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중독위험 수준별 치유서비스

지원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교육부)

-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을 포괄하는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지속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 지정
- 초등 생존 수영 연차적 확대 운영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 학교급별, 수준별, 역량별,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 개발·보급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추진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 근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다수 근로 업소·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 부당노동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통계청·법무부)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
- 출생신고제도 관련법 개정 및 처벌 강화 검토

• 아동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
- 초중고생 등 독감 예방접종 지원 단계적 확대

▌ 이주자 보호

- 방문취업 동포 지원·관리 (고용노동부)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법무부)
  -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법무부)
  -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 인권 개선 (법무부)
  -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의 강화 및 재외 동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보건복지부)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교육부)
  -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가 학교 전·입학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주민센터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학교 입학안내 자료('우리아이학교보내기') 비치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년~'23년)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이행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간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한 부처 간 연대 및 협조강화
-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법무부)
  -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병행 실시
  -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대상 확대
  - 귀화·영주 신청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강화
  - 재정착난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NGO와 연계하여 취업·육아·취학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공

- 야간반, 주말반, 온라인 화상교육 및 이동교실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 외국인 사회통합 활성화를 위해 비자관련 법률, 취업·창업, 보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 이민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체류허가 등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이민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대학교의 학부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과정 확대
- 이민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교육, 재난안전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고용노동부)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13개 언어 지원)

•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 지역농협 자원을 활용한 농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상담 실시

•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여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상담,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
-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지원,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지역문화기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등 교류 네트워크 구축, 주요활동 축적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 (법무부·교육부)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법무부)

-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법무부)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국가정황 연구조직 운영(’ 19년 추진)
-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법무부)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통일부)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 18년~’ 20년)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탈북민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 지자체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개편하고 탈북민 지원 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없이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탈북민에 준하여 지원 확대
- 탈북민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강화 (통일부·고용노동부)

- 직업역량 강화 및 탈북민 적합 일자리 지속 발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내실화
- 대상별 맞춤형 자립·자활 정착경로 지원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로 탈북민 자산형성을 지원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통일부)

- 거주지 초기 정착지원 강화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
- 탈북여성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자원 연계를 통한 탈북민 무료지원 서비스 확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추진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통일부·교육부)

- 입국 초기 적응교육 강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력체제 활성화 등 종합 지원 체제 강화
- 통일전담교육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탈북청소년 멘토링
-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

▌성소수자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분류에서 성소수자 항목이 제외됨

나.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8)』을 통해 충청남도의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증진의 방향과 과제를 계획하였음
- 도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권취약계층별 인권증진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음

▌노인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 보장
  - 시설입소 이전과 이후의 노인인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인권실현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평가하고, 모든 케어환경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당진시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함
  - 다인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입소노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시설의 관리중심으로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입소시부터 임종 또는 기타 사유의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에 노인인권 침해 요소의 유무,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지도방침을 마련함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입소자 또는 입소자 가족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입소노인 당사자 중심의 인권 수준을 확보하고, 가정보다 더 편안한 국가지원 공공의 서비스로 향상시켜야 함
  - 자녀나 기존 개인소득을 통한 사적노후보장이 준비되지 못하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사유로 인하여 효자보험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현황파악 및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
  - 인권존중 서비스를 실현하고 노인학대 가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요원들에 대한 노인인권 감수성 교육을 정례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거점으로 한 인권 종합 상담 창구 일원화
  - 건강문제, 정서문제, 경제문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문의 등 각종의 노인상담을 종합적으로 대처 가능한 노인 전용 상담 창구가 필요함
  - 위험상황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최대, 최적의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

- 최소한의 노인인권을 교육하고, 인권친화적 제도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평가기관으로서 이미 구축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을 통해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인권상담, 노인학대 스크리닝 및 판정, 학대행위 조사 및 사후관리 등 One-Stop Solution을 추진
- 노인 당사자, 공무원(소방, 행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등 노인의 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유아, 청소년, 일반 성인에 대한 노인의 공경심과 효사상, 노인의 인권교육(타 영역의 인권과 동시 가능)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과 노인의 사회통합의 발판으로 마련

• 전체 노인에 대한 삶의 이면(裏面) 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에 치중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전체 노인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 노인의 종합적 문제해결을 꾀하여야 다층적인 접근과 소외되지 않는 인권정책이 가능함
- 죽음, 자살, 호스피스, 건강보장 등 노인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정책을 피하고, 직접적으로 어둡고 노인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최적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선을 지켜줄 수 있는 적극적 인권을 실현해야 함
- 노인의 여가문화 등 소비적 공간에 대한 유니버설한 디자인과 공공성을 한층 강조하는 차원으로의 변모를 꾀하여,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누구나 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한 삶의 이면을 긍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 구현

- 변화없는 단순한 일자리갯수 늘리기에 동참하기 보다 노인을 최소한 세 분류(57세~65세 young-old, 66세~75세 middle-old, 76세~이후 old-old)로 세분화하여 고령인력 적합 직종을 재편성함
-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직종별로 점검하여, 노인이 충분한 조건하에서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장과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홍보
- 노인의 빈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군별로 일률적인 시니어클럽 지원형태로부터 다양한 직종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정책 선회가 요구됨
-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직종 등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적

합직종을 개발하고, 1% 의무고용률을 제정하여 노후의 소득보장 및 자아실현을 범국가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장애인

- 사회적 기반 구축
  -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편리를 도모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남·녀화장실, 대중음식점에 장애인을 위한 입식 식탁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률을 제고함
  - 민·형사사건 등에서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
  -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를 접근권이 더 필요한, 더 소외된 장애인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
  - 인터넷을 통해 장애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강화
- 실질적 기본권 보장
  - 중도·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을 신장
  - 의료·보건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농·어촌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병원으로의 장애인접근성을 개선
  -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령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의 교육권을 개선
  -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학력(경력단절)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확립
  - 편견,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 향유권을 개선
  -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가계운영과 개인생활을 불편을 해소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예방·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

•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 자립생활센터를 추가로 설치
-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과 시설장애인의 인권교육을 강화
-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확립
- 의사(언어)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보급하여 활용
-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체험 홈 및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

▌여성

•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 인식이 도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 과 '차별'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성차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정책개선안들이 환류되어 정책체감도를 높여야 함
-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서는 현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뿌리 깊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므로 항시적이고 예방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 및 가족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발방지와 함께 가해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업, 인신매매 등과 얽힌 사회구조적인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제고하고자 함

-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성소수자의 보건·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을 높여야 함
  - 여성소수자들은 여성이면서 소수자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일 가능성이 높음.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마을단위에서의 보호체계가 필요함
-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 보장
  -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정규직, 좋은 일자리 중심의 제도화된 일·가정양립제도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업지원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농어촌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재산권,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고해야 함
  -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요구는 계속 확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열악한 노동환경분야이므로 처우개선 정책이 시급히 요구됨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인권보장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청소년인권보장시스템 마련
  - 아동청소년의 행정참여권 보장
-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 보장
  -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 발달권 보장

- 가출 등 가정에서 이탈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 대안양육 지원 확대
-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

• 장애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 모든 아동 기초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

-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권을 보장하며,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교사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교육행정과의 협력을 강화
- 청소년 자살률로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정신보건 증진 방안을 마련
- 성교육을 포함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 기초보건 서비스의 확대

•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기반 마련

- 학업중단/이탈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기반 마련
- 실질적인 진로직업관련 교육 기반 구축
-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특별보호조치

- 청소년 노동권 보호 장치 마련

▌이주민

• 입국 전후의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노동자의 경우 작업장이나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일을 시작하여 산재위험이 높음
-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중매업소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전후 한국 작업 환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사회적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 제공

- 이주 노동자의 경우 기본 교육 없이 작업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충분한 한국의 문화와 언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댁이나 마을 주민들

과의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정착에 도움을 제공

- 한국에서 생활에 문제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등에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상담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 출신국의 네트워크는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 인간다운 거주환경의 마련을 위한 노력
  - 공장노동자의 부적절한 숙소(콘테이너 박스 등), 과당 요금 징수(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 난방 및 온수 사용 제한 등의 기본적 주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음
  - 여성노동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 주거권 이외에 경비 등의 여성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숙소 제공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
  - 특히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숙사로 비닐하우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있음
  - 충남 내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이주여성 쉼터를 경유(퇴소)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
-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
  - 이주민에 대한 의료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병원이용의 어려움이 있음
  - 한편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음
  - 기존의 의료제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번역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이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및 노동권 보장
  - 이주여성의 비자문제 및 노동자의 고용 허가기관 이후의 복잡한 재계약 절차의 문제로 체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됨
  -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 이주민

의 체류안정성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 이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 이주민의 경우 임금체불, 산재, 신분상의 이유,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인권을 보장 받는 개인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함
-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 육체적 폭력의 문제는 많이 줄었지만, 언어폭력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마련
  - 종교적 자유의 침해(특히 이슬람) 문제 등을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정책을 마련
  -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과 홍보 등의 정책을 마련

▌농업인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반 구축
  -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담당하는 먹거리, 문화, 환경,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표준적 삶을 누릴 기반 구축
  - 현재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50%로 하락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가 점점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
  -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음으로 중요한 격차문제는 교육과 복지부문의 격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농촌의 복지문제는 도시와는 달리 과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주민의 노령화로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나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 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장기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
-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참여와 감시체계 구축
  - 농촌의 환경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의 환경보존체계에 참여권 보장
  - 현재 농촌생활권 환경보전에서 농민이 배제되고 있는 상태임
- 향토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존 및 유지, 발전체계 구축
  - 농촌지역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는 농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존, 유지, 발전 방안이 필요
- 토지를 가꾸고 보존할 권리체계 구축
  -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대농 위주의 정부정책에서 소농들이 토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우리 토양과 환경에 적합한 농사를 지을 권리 보장
  - 최근 외국계 종자회사들은 GMO 종자를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
-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 기반 구축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많은 기관에서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정보를 몰라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 주된 원인은 정부정책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긴 하지만 실시 범위가 좁고 농촌에 전문 관리인이 없다보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농산물 가격 및 보상체계에서 농민참여의 확대 실현
  -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도시소비자 위주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결정체계에서 늘 배제됨
  -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산물과 재산피해에 관한 보상체계 역시 도시소비자에 비해 농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상가격은 대부분 농민의 기대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음
- 농민인권을 포괄적 정의(justice)문제로 승화
  - 농민인권의 핵심은 공유자원(토지 등)과 생태환경자원(물)을 국가와 자본(기업)이 독점해 소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임

- 근래 들어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 유통 등으로 인해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농민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민인권을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정의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어업인

- 어업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기반 강화
  - 어업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권을 교육을 통하여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
  - 어업분야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접근
- 오지 어촌의 의료 및 교육 강화
  -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어촌이탈 주민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

4. 대 · 내외적 여건변화

가. 시대적 변화

▌민주화

- 우리나라는 군부독재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로 이행했음. 특히 2016년 촛불집회는 국민의 주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권 증진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하게 되었음. 민주화속에서 시민은 인권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음.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의 참여의식이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민주화과정 속에서 시민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음. 시민은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게 되어,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경제발전에 따른 시민의식의 전환

-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은 절대적 삶 자체를 걱정해야 했던 극심한 궁핍속에 있었음. 절대적 궁핍을 극복하고자 권위주의적 정권의 경제발전전략 속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과정속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인권은 보호되지 못했음
-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통해 절대적인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 국민은 이제는 경제발전의 희생물이 아니라 수혜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음.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음. 개인은 이익단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억눌렸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시민은 시민단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음. 경제가 발전되면서 경제적 삶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의 욕구도 증가하였음

▌지방자치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음. 지방자치에 따라 중앙집권적 행정이 분권적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음.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주도하에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임. 아직 실질적 지방분권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의식은 확고하게 정착되었음
- 인권문제는 현장에서 직접해결해야 함. 자유권, 사회권은 중앙이 아닌 현장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인권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주민자치제가 정착되면 인권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자치영역으로 대두될 것임

▌양극화

-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양극화는 지역적, 계층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지역적으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FTA가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발전하는 반면, 1차산업 중심의 농·어업의 생산경쟁력이 감소되었고, 고령화와 더불어 농·어촌은 공동화까지 진행되고 있음. 농·어촌지역은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이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 산업별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음. FTA의 수혜를 입는 기술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발전하는 반면, 전통 1차산업은 쇠퇴하고 있음. 국토의 많은 공간이 1차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1차산업의 가격경쟁력 악화는 지역적 쇠퇴로 이어지고 있음. 제조업내의 양극화도 나타되고 있음. 기술집약적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도 나타남.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음. 가격경쟁력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노동분야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인권차원에서 세계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문제임

- 계층별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일부 소득상위층에 반하여 소득하위층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와 사회는 발전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더 취약한 다수의 소득하위층이 발생하고 있음. 무한의 경쟁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고용의 문제를 야기하게 됨. 고용문제, 비정규직의 양산 등은 계층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고, 이는 산업별 양극화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계층별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 삶의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 개인의 공정한 기회에도 악영향을 초래하여, 개인의 사회권을 제약하고 있음

▌정보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민들의 즉시적 소통을 확대함. 특정 지역의 이슈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파되어 전 지구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이슈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이슈가 되기도 함. 대표적으로 미투(me too)운동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폭행문제를 세계적 차원으로 전파시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권을 지키려는 자발적 연대가 형성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음

▌인권중심 국정

- 문재인정부가 집권하고 사람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하면서, 인권은 향후 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임
- 사회취약계층, 소수계층 등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나. 권리별 여건변화[1)]

1) 보호권

보호권은 생명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 보장의 권리임

▌생명권

-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되고 있음
-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중 12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은 여전한 사회문제임

▌신체의 자유

- 구속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남용방지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이 지속되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고용문제가 인권차원에서 논쟁이 되고 있음
-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 난민의 인권문제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논의될 만큼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음

▌안전권

-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신체·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치료 인프라 및 경제·의료지원 확대가 이슈화되었음
-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돌봄 등에 인식이 확대되었음

1)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2) 평등권

평등권은 입법과 법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임

-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설에 재입소하는 문제가 제기됨
- 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이 필요함
- 일부 대기업의 임원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인권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음.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언어적 폭력에 대한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으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

3) 자유권

자유권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자유와 권리임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 2018년 대법원이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음

▌표현의 자유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찬반이 전개되고 있음.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간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해짐

▌결사 · 집회의 자유

- 집회 ·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주장과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

- 해킹 등 신기술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가 대두됨

▌거주 · 이전의 자유

- 최소한의 주거수준 확보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권리로 그 범위가 확장됨
-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속적 확충 등 정책이 수립 · 시행되고 있음

▌인격권

- 특정범죄자에 대한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 등 인권침해 최소화가 요구됨

4) 참여권

참여권은 권익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 행정 · 사법이 정의롭게 실현되도록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임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군인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체계 마련 및 군 내 인권침해 예방 · 신고 · 구제 체계 강화 필요
- 다양한 공공 갈등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집단민원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민 여론과 시민

사회의 대립이 있는 상황임

▌참정권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 중 여성과 장애인이 부족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5) 보장권

보장권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임

▌노동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 대기업의 하청계약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적으로 비판되고 있음
- 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이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확대되었음
- 고용의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포용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 부동산 가격 폭등, 이에 대한 정부의 투기억제책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더욱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었음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 고령화에 따라 치매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음
- 학교 성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도록 내실화가 요구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병력자의 치료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함

▌교육을 받을 권리

- 실업계고등학교생이 현장실습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현장실습이 폐지됨
- 일부 지자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임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문화적 양극화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이 요구됨
- 청소년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수시 개최하여 상시적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다매체시대에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 요청됨
- 노인들이 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함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전 연령 및 계층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필요함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시행중이나, 여성에 비해 비율이 낮아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및 관련 제도 활성화가 필요함
- 사설유치원의 회계부정이 폭로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른 인권보호 및 국제결혼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함

제3장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

2. 추진전략

1. 계획의 비전

가. 비전도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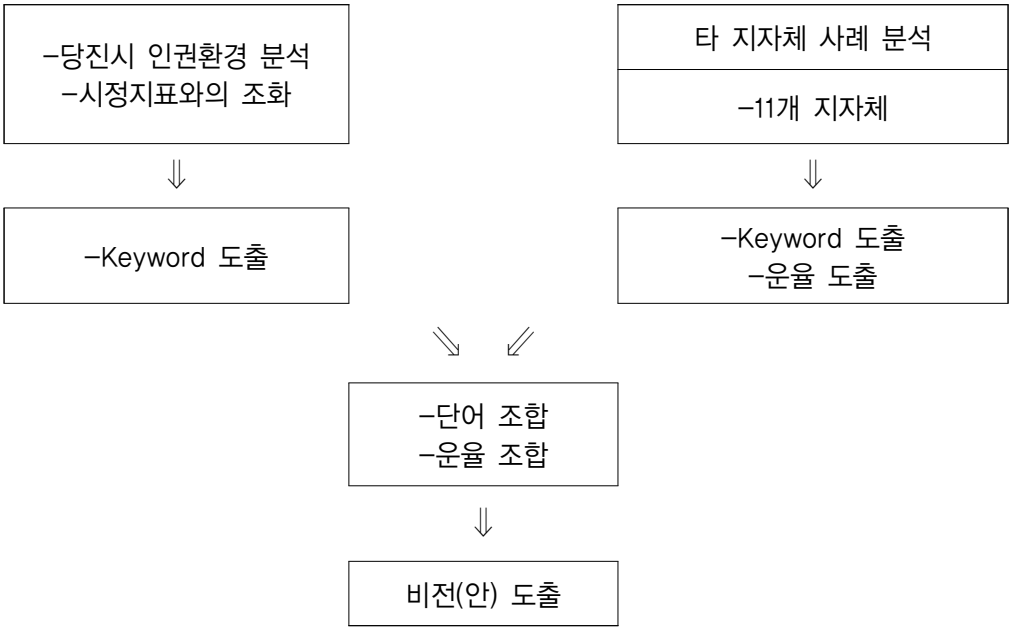

나. 비전 Keyword 선택에서의 고려사항

- 단어선택에서의 고려사항
  -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단어를 고려하였음
  - 靜的인 단어보다는 생동력이 있는 動的 단어를 고려하였음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순수성이 있는 순 한글 단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음
  - 행정적 단어를 지양하고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민의 정감있는 생활단어를 고려하고자 하였음
- Keyword
  - 사람중심, 인권, 인간(적), (글로벌)인권도시, 행복, (인권)중심, (행정)중심, 평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품격있는, 따뜻한, 함께하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도약, 살맛나는

- 운율선택에서의 고려사항
  - 신선감을 줄 수 있는 변화있는 운율을 사용
  - 서술적인 표현을 피하고, 절제된 운율을 사용
  - 전체적으로 통일된 운율을 사용
  - 시각적 디자인을 높일 수 있는 운율을 사용

다. 비전

함께하는 인권, 살맛나는 당진

▌ 비전의 의미

- 시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인권사회를 조성
- 모든 시민의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살맛나는” 당진 만들기
- 인권으로 하나되고, 인권으로 살맛나는 자랑스런 미래 당진을 의미

2. 추진전략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지역의 인권취약층에 대한 차별을 극복
  -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차별·불평등을 해소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 인권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고양
- 시민들의 삶속에 인간의 가치와 문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인권문화를 형성
  - 효율적인 인권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인권감수성을 고양

▌인권제도 정비

- 당진시 인권보호와 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행정체계를 정비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전체계를 구축
- 시민사회, 인권단체·기관 등이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권거버넌스를 구축

[표 31]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세부부문	세 부 사 업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노인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교육) 사업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 -독거 노인 문화지원사업 -독거 노인 생활안전시설 설치
	장애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학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불법 노상적치물 점검 -편의시설 모니터링
	여성	-양성평등 캠페인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 피해자 여성장애인 교육 · 상담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동료상담' 지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	-다문화가정 청소년 공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다문화 아동 멘토링 -다문화 정보교류 사이버공간 구축
	아동·청소년	-장애·다문화·학교밖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모니터링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청년창업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노동인권 보장 우수 업체 선정 및 홍보 -비정규직의 인권침해 대응 네트워크 구축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립 및 산재예방교육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의료검진
인권제도 정비		-인권실태조사 -인권 문화홍보행사 -(가칭)당진시인권센터 설립 -인권감수성 교육

[그림 16] 사업 도출 체계

인권 욕구·침해 조사
인터뷰
관련계획 검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충남 인권정책기본계획
지자체 인권계획
11개 지자체
인권사업 (안) 도출
타 실과 사업과의 중복 배제 (예, 사회복지 등)

제4장 부문별 사업

제1절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제2절 인권제도 정비

1.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1. 노인

가. 실태 및 문제점

1) 노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노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의 미흡

- 종합병원, 의료진 등 진료권의 미흡
  -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당진내에서 신속한 처리 불가능
- 노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필요
  - 건강권 증진을 위해 연령에 의한 우대 제도 개선 필요
- 건강약자를 위한 이송시스템 부족
  -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하여 성인 및 고용주의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미흡함

▌ 노인의 안전권 보장 환경 미흡

- 노인의 위급 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
  - 긴급 연락망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급 상황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전 진단 시스템의 부족
  -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고 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없음

▌ 노인의 이동권 보장 미흡

-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중교통 이용시 저상버스가 적어 승하차시 어려움
  - 노인에게도 유용한 전용 이동 수단이 없음
- 고령자들의 이동이 어려움

-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을 이용하나,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교통 수단이 없음
- 독거 노인의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병원 진료조차 어려움

2)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및 지원 부족

▌노인을 위한 사회적 시설 부족

-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함
  - 대부분의 시설이 당진시 중심에 집중되어 있음
  - 노인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이용이 어려움

▌노인의 여가권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 복지회관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이 적음
  -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3) 노인의 활동 보장 및 인권사업 미흡

▌노인의 사회 참여 보장 미흡

- 노인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없음
  - 인권의 침해, 학대 등을 당했을 때 적절히 이를 해결하거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없음
- 노인의 사회 참여 교육이 적음
  - 노인들도 생활을 위하여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음

▌노인 관련 인권정책 미흡

-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
  - 적합한 일자리 창출, 소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없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움

나. 기본방향

▌노인의 기본적 인권 증진을 위한 인식 전환

- 노인 인권실태 체계적 파악
-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 확대

▌노인 인권 시설 및 개별 지원 확대

- 독거노인 보호시설 확대
- 의존 노인을 위한 지원 강화

▌노인의 사회적 참여권 보장

- 노인 관련 사회적 교육 증대
- 노인의 경제적 참여권 확대

다. 세부사업 및 시책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시대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촌 空同化로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화될 것임
  - 독거노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 예산계획 : 비예산시책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교육)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인권의 문제는 노인 당사자가 인권감수성이 미약하다는 데에 있음
  - 시설내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노인, 노인시설 종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들이 가족이나 기관, 장기요양시설에서 학대당하지 않도록 지킴이가 필요
  - 사회보장이나 건강서비스, 생산적인 자원, 직업, 음식, 거주의 문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실태분석이 필요
- 사업개요
  - 당진시 노인인권지킴이단(노인학대 신고·접수 등) 운영
  - 이장, 부녀회장 등을 지역노인인권지킴이단으로 활용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신노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
- 노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 필요
-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관리, 인생설계, 신용·재무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신노년층을 위한 교육
- 당진시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독거 노인 문화지원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생활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과 함께 사회 참여 확대
-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한 노인문화 형성 필요
- 독거 노인들에 대한 문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독거 노인들에게 당진시 문화 정보(산책, 여행, 레크리에이션, 친구 찾기, 자원봉사, 취미활동, NGO,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제공
  -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독거 노인 생활안전시설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노년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와 전통적 가족의 변화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된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와 노인 단독세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성의 질적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생활안전을 위한 서비스의 증대가 요구되는 시기임
  -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위급상황을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독거노인 댁내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신속대응
  - 댁내 응급호출버튼 설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2. 장애인

가. 실태 및 문제점

▌ 이동권 제약

• 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수단(장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음

- 도농복합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콜 증차가 요구됨

•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체계개선이 요구됨

- 현재 장콜이 주중에는 18:00시까지, 주말에는 2대가 17:00시까지 운행중임. 예약은 17:00시까지만 받고, 점심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음. 야간에도 운행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더 많은 장콜이 운행될 필요가 있음

• 저상버스의 확대

-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이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는 농어촌장애인은 비싼 택시를 이용해야 함. 비용이 저렴한 저상버스를 확대하여 농어촌장애인의 교통요금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편의시설 비미

• BF(Barrier free)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을 제약하는 시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음

- 실제로 경사로, 경사각도 등 BF 설치 단계부터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요구,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인도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에 불법적재물과 홍보용 현수막이 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
- 마을행사에도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편견

-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문맹농아인은 진술서 등을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비장애인과 분쟁이 있을 때에도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런 패배의식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각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여가권, 문화향유권의 제약

- 장애인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 장애인은 정보와 기회가 부족하여 문화·예술·체육활동이 제한됨

▌참여로부터의 소외

- 마을회의・행사에서 참여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각종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활불편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생활이 불편해도 하소연할 때가 없어, 스스로 참고 견디고 있음
  - 경로당, 장애인 행사가 있어도 장애인의 참석을 도와주는 마을주민이 별로 없음
-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사회참여가 가능함. 수화통역사가 한정되어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한정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이 부담이 되어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음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에서 차등이 있음

▌정보접근권에의 제약

-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 폴더폰을 이용해서 사회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 청각장애인 가운데에는 문맹인이 적지 않음. 문맹인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문맹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교육이 절실함

▌취약한 생활권

-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음
- 수급자는 일을 하더라도 일정 수급액을 인정해주어, 노동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한된 교육권

- 학령기 이후에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사회에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동권이 제약되어 학원 등 사회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화통역사를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동반해야 하는 조건으로 입학 및 수강을 허용하는 기관이 있음

▌위협받는 건강권

-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과 후유증상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건강·보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은 비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음

-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에서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어 아픈 것이 너무 고통스러움
- 장애인을 불편해하는 병원이 있어, 심하게 아프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장애인이 적지 않음

▌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

-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추행이 사회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음

나. 기본방향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준공후에 불법으로 타용도 사용되고 있는 편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화장실, 대중음식점 등의 편의시설 이용률을 제고함
-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함
  - 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함
  - 장애인이 일반 대중교통수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개선함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병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함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개선함
  -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스마트폰, PC 등을 활용하여 정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활성화하여, 장애 유무 뿐만 연령, 국적과 언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함

▌장애인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함

-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최선책임
  - 장애인 스스로가 인권침해요소를 인식하여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차별적 인식이 없이 더불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됨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협된 사고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음
  - 장애인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경시하는 비장애인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요구됨
- 사회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함

▌장애인의 법적·경제활동관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

- 각종 민·형사사건, 계약 등 경제관련 사안 등에서 장애인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함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개선함

-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은 교육받을 기회가 크게 제한됨. 학령기 이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로 교육받을 환경을 개선함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강화를 위한 장애인일자리를 확충함

-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여건을 개선함
- 경력단절 장애인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확립함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문화·여가권을 보장함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다. 세부사업 및 시책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일부 장애인시설내 인권침해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시설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학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학령기부터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적 인식을 제거
-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향후 사회생활을 지원함

• 사업개요

-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실시
-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불법 노상적치물 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인도의 불법 노상적치물이 휠체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의 이동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사업개요

- 불법 노상적치물에 점검 및 단속을 강화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도로정책팀

• 예산계획 : 비예산시책

▌편의시설 모니터링

- 배경 및 필요성
  - 건축물 준공검사 이후 장애인화장실 등을 임의 개조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함
  - 준공검사 이후에도 민간건축물에 대한 불법개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매년 관내 건축물의 편의시설 관련 불법 용도변경에 단속을 강화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예산계획 : 비예산시책

3. 여성

가. 실태 및 문제점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 많은 여성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여권이라는 의식이 낮으므로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확산이 필요함
- 여성농어업인은 차별적 지위에 놓여 있음
  - 농어업에 대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노동하지만, 대표성은 대부분 남성(남편)에게 주어지며, 재산권도 매우 약한 실정임
  - 여성농업인은 가족종사자로 인식되어 남성농업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생활 등으로 과다한 노동상황에 있음
- 여성농어업인 가구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함
  - 여성농어업종사자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큼
  - 농어촌 지역에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미흡함
  - 특히 여성고령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지원, 생활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함

-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낮음
  -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음
  -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요구됨
- 정기적이고 대중적인 폭력예방교육 기반이 미약함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의 폭력 예방 교육은 대기업, 학교,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학교, 단체, 공장 등에서의 정기적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강을 원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시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특히, 소규모 공장 등에서의 교육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교육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수강인원을 모으기 쉬운 노인대학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성과주의 행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교정 치료 미흡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흡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미비함
  - 피해자 상담, 가족지원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가해자 교정치료 미비
  -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가해자문제가 매우 중요하나 교정치료 등이 미약함
  - 보호관찰 확대와 더불어 교정치료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연계가 요구됨

▌성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의 인식전환 교육 전무

- 정신·지적·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 성추행 등의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실행되고 있으나 성 피해자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미흡함
- 편부 여자자녀에 대한 성폭력·학대가 발생하고 있음

▌여성의 경제참여 환경 열악

- 일·가정 양립이 미흡하여 여성의 경제참여권이 제한됨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고 개선되었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낮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와 고용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에 속한 사람은 지원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 누구나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늘어나 돌봄 노동자도 늘어날 전망임
  - 대다수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며, 고령 여성 주된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함
  - 돌봄 노동자 임금을 높이기 위한 인건비 고정, 최저임금 보장 등 고용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
- 근절되지 않는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과 미투운동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민간사업장이나 일반사회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

- 여성가구주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을 안고 있음
-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임

▌불안전한 여성의 안전권

- 당진시는 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이 있으므로, 특히 야간에 여성의 안전권이 우려됨

▌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미흡

- 당진시에 가족성통합상담센터는 있으나,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는 없음
- 피해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공포가 없는 곳에서 휴식과 더불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함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은 농촌에서 농업 · 가사 · 양육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처해 있음
-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취약하며,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
- 지자체의 지원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농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의 수혜를 대부분 남성이 누리고 있음

나. 기본방향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기반 강화

- 인권교육이 생활화되도록 모든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권교육이 모든 기관에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교육의 의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요구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이 요구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가족차원에서의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함
- 피해여성이 치료·휴식을 받을 수 있는 (가칭)여성폭력쉼터가 요구됨

- 편부 여성자녀에 대한 성폭력·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족에 대해 가족교육사업이 요구됨

▌여성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및 관리 제공

-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고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을 확대함

▌다문화 여성 자립 역량을 위한 지원 제공

-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다문화 가족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건지원 확대가 필요함

▌일 · 가정 양립지원정책 강화

-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함
-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을 지원함
- 북한이탈여성,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함
- 취약계층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함

▌안전권 보장

- 폭력에 취약한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해 (거리)폭력으로부터의 안전권을 강화함

▌여성농업인

- 농업 · 가사 ·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
- 여성농업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여가생활을 지원함
- 농가대상 지원정책을 성인지성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함
- 모성보호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함

다. 세부사업 및 시책

▌양성평등 캠페인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농어촌지역까지는 파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인권에 취약한 지역여성들에 대한 양성평등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양성평등주간에(7.1.~7.7.) 여성안전 및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는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서 학교, 회사,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상담·교육하고 있음
  - 센터에서는 주로 치료, 강사 및 상담사 양성, 훈련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성에 대한 부담으로 소규모 공장 등에서는 인권 및 성폭력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성폭력 교육 포함)을 받아본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빌미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성폭력 교육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 따라서 안전교육(성폭력 교육 포함)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기화 될 수 있

도록 행정차원에서 교육수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반대의 경우 벌점을 주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인센티브 또는 벌점)로 당진시가족성통합상담센터의 기능 강화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예산계획 : 비예산시책

▌성 피해자 여성장애인 교육 · 상담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성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 사후 심리치료 등에 비해 사전예방 및 사후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대처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생활마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피해자 교육을 통해 사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성피해 예방 및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사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
  - 당진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주관으로 지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	10	10	10	10	10	
국 비							
도비							
시 비	50	10	10	10	10	10	

▌여성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동료상담'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동료상담임
  - 다만, 피상담자가 여성인 경우 방문동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대체로 여성을 포함한 2명의 동료상담사가 가는 것이 안전적임
  - 현재 정부에서는 1명의 동료상담사에게만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어 동료상담 진행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당진시 차원에서 나머지 1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동료상담의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찾아가는 동료상담 1인 활동비 지원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0	50	50	50	50	50	
국 비							
도비							
시 비	250	50	50	50	50	50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 배경 및 필요성
  - 밤길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 밤길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안심보행 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에 귀가 30분전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관내 "해병대전우회" 등 봉사단체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유도하고 지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	10	10	10	10	10	
국 비							
도 비							
시 비	50	10	10	10	10	10	

▌ 여성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실정과 기업수요를 반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여성의 일자리 수요에 대한 조사와 이에 맞는 취업반 집중 육성
-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증대

• 지원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	10	10	10	10	10	
국 비							
도비							
시 비	50	10	10	10	10	10	

4. 다문화

가. 실태 및 문제점

▌ 외국출신에 대한 차별적 인식

•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 학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적 인식을 받고 있음

- 피부, 눈색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같이 어울리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음

▌언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함

- 사건·사고를 당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여성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족하여 가해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음
  - 특히 분쟁해결에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 언어문제로 공공기관보다는 같은 출신국 여성을 통해서 해결함
- 일자리를 구하는데 언어문제가 장애가 됨

▌결혼전 한국사회 정보가 부족함

- 결혼상대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댁과 마을주민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음
- 결혼전 허위정보로 결혼 이후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

▌정보접근권의 한계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언론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한국사회 정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농촌의 다문화여성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적응·교육프로그램에 접할 수가 없음
- 다문화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취업프로그램이 부족함

▌건강보호에의 어려움

- 언어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임신, 육아에 필요한 건강·의료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자 등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감수하는 경우도 있음

나. 기본방향

▌정보접근권의 확충

- 이른 시일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글교육의 기회를 확충
- 입국 전후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함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이해 증진

- 다문화여성 새로운 사회에서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증진
  - 다문화여성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한국 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

▌인권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다문화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 인권침해 제소·상담·구제 등을 지원한 지역사회내 지원체계를 강화

다. 세부사업 및 시책

▌다문화가정 청소년 공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문제점 및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중추기관임
  - 관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할을 수해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그 외 청소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	10	10	10	10	10	
국 비							
도비							
시 비	50	10	10	10	10	10	

▌다문화 아동 멘토링

• 배경 및 필요성

- 언어문제와 차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지원과 차별의 상처치유를 도와줄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관내 신성대학 학생과 다문화아동과의 1:1 멘토링을 실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비							
시 비	100	20	20	20	20	20	

▌다문화 정보교류 사이버공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당진시청 홈페이지 등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줌
-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당진시에 대한 요구사항 보다는 다문화여성 및 다문화가족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사회적응력 및 당진시민으로서의 소속감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유사홈페이지에 “다문화 교류공간(가칭)” 마련하거나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예산계획 : 비예산시책

5. 아동 · 청소년

가. 실태 및 문제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미흡한 인식

-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미흡
  - 학교 및 기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미흡
- 성인 및 고용주 대상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미흡
  -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하여 성인 및 고용주의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미흡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및 욕구 파악 미흡

-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파악 미흡
  - 아동·청소년들의 인권피해 및 인식수준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욕구 파악 미흡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및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청소년 노동권 침해

-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청소년에 대한 고용주의 인권침해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부족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지원대책 미흡
  -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음

▌장애 및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취약

-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지원 미흡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교육권 및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정책 미흡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중심으로 추진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또한 인권친화적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이 큰 조례와 정책들임

▌아동·청소년의 청소년유해환경에의 노출

- 청소년이 유흥거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줌
-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진·동영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나. 기본방향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 전환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체계적 파악
-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를 위한 교육 확대

▌아동청소년 인권 시설 및 지원 확대

- 요보호 아동·청소년 시설 확충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아동·청소년들의 의사표현과 관련 정책의 참여 확대
- 아동·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아동·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화 추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업소와 인터넷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다. 세부사업 및 시책

▌장애·다문화·학교 밖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모니터링

-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다양한 형태의 법률과 제도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실효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장애·다문화·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받기에는 정책적 한계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권리증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장애·다문화·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모니터링을 협력기관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제공함
    - 시,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각기 추진되는 항목과 내용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제공토록 함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평생교육새마을과 학교청소년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0		10		10		
국 비							
도비							
시 비	20		10		10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주 요인이 성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 고용주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개요
  - 당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만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청소년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안내 및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책자 작성
  - 당진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발간물 및 발행물에 아동·청소년 인권 안내 및 홍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평생교육새마을과 학교청소년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		10				
국 비							
도비							
시 비	10		10				

6. 비정규직

가. 실태 및 문제점

▌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의 다양화

• 단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근 용역, 촉탁직, 사내하청,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음

• 새롭게 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사용자-피고용자) 아래에 있지 않고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고용관계에 놓이는 특징을 보임

▌ 사내하청 노동의 증가와 비정규직 차별 사례 증가

• 사내하청의 의미

- 하청업체 사업주가 일감을 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부 생산 공정이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임.[2] 조선・자동차・철강・기계・금속 업종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됨

-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제와 달리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업무를 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하고 업무지시도 하청업체로부터 받음[3]

2)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네이버 지식백과)
3)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7] 사내하청의 계약 구조

- ‘사내하청’ 은 원청업체에 몇 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 원청업체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의 책임과 인건비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동시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함
  - 또한, 고용에 따른 여러 책임은 ‘하도급계약’ 을 매개로 사내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전가할 수 있음
  - 그에 반해,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도급 업체의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고, 원청업체 근로자와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낮은 복리후생에 처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

- 비정규직은 급여뿐만 아니라 휴가, 시설여건 등의 복리후생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음
  -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명절 귀향, 체력단련 등의 복리후생과 주차시설, 사내시설 이용, 자녀교육, 의료지원 등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겪음[4)]
  - 정규직에게 지원되는 체육대회, 운동회 등의 행사, 의류, 시설개선 등이 비정규직에게 배제되는 차별이 나타남
- 또한 비정규직에게 추가업무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함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일례로,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7년 4월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조합원 1,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

4) 출처: 참여와 혁신(http://www.laborplus.co.kr) 2018년 10월 24일 기사 “비정규직도 인권은 존재한다!”

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음

- 2017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비정규직의 생존권 위협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인권교육,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산재사고의 위협 속에 근무를 하게 됨
- 비정규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음

▌비정규직의 건강권

- 비정규직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이게 되어 건강위해요소에 노출되거나 위험한 작업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 일례로, 정규직에게 지원되는 공기청정기가 비정규직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휴게 공간 또한 제공되지 않음
- 그럼에도 산업안전교육이 미비하고, 산재보험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충분한 혜택을 받기 어려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 취약

- 식당과 같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주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노동인권 침해 발생 사례가 많음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 활동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기능강화

- 당진시는 2016년 1월에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000여 명을 위해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함
  -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로 선정됨. 2017년부터 센터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됨
-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

- 센터는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과 기능강화가 필요

나. 기본방향

▌비정규직 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

- 비정규직의 인권문제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관내 노동/교육/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권침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관내 노동현황에 대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등 일반 생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일반 노동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펼쳐야 함

▌비정규직의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고 보호하며 상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한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을 실시함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당진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

다. 세부사업 및 시책

▌영세 사업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로 활용하는 식당, 소규모상점 등 영세 사업자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인권 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노동인권 등을 교육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함
- 사업개요
  - 당진시에서 식당, 소규모상점 등의 사업주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 소개
  - 노동상담소와 연계하여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교육 실시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강사단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배경 및 필요성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를 수행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유관기관인 학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신성대, 세한대, 관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 구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청소년이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시 노동인권 침해를 받을 경우 교내 신고센터나 노동인권상담실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당진시비정규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마련
  -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신고접수된 사례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서비스 지원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	2	2	2	2	2	
국 비							
도비							
시 비	10	2	2	2	2	2	

▌청년창업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고용주의 노동법이해 및 인권의식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창업단계에서 고용주에게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당진시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함

-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노동인권 보장 우수 업체 선정 및 홍보

• 배경 및 필요성

- 고용주의 인권의식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사업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보호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홍보함
- ‘인권안전 사업장’ 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의 인권의식을 제고함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예산계획 : 비예산시책

▌비정규직의 인권침해 대응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차별, 불평등한 근무조건, 각종 인권침해 아래 있지만, 구제나 시정이 어려움
- 비정규직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양한 노동단체 및 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인권센터, 지역 노동단체, 관서와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조직과 공동으로 교육이나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담 및 법률지원 업무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함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사업은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	2	2	2	2	2	
국 비							
도비							
시 비	10	2	2	2	2	2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립 및 산재예방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비정규직은 3개월~1년 단위로 교체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안전지식이 축적되기 어려워 산업재해에 취약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개요
  - 당진시가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설립하고 '명예산업안전관'을 위촉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또한 비정규직 대상 산재예방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7. 북한이탈주민

가. 실태 및 문제점

▌ 낮은 경제수준

• 삶의 질의 측면에서 소득, 고용률 등 경제수준이 일반국민에 비하여 낮은 상태임

- 특히 중국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생활이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음

▌ 미흡한 사회통합

• 북핵사태 등과 연관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남한 국민이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웃주민들의 몰이해와 냉대로 북한이탈주민은 외로움, 소외감을 느낌

• 특히, 남한 언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한 주민과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조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고용하지 않으려 하여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외국인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을 거부당하는 경우를 겪음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용계약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취직시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부과받는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겪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차별

-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정보, 행정정보가 부족하여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생활에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공무원의 무관심과 불친절을 겪음

▌학교생활에서 외국인 취급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학교에서도 외국인으로 인식되어 학교생활에서도 남한 학생과 차별되는 경우도 있음

나. 기본방향

▌노동권 개선

- 직업훈련, 취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지원

- 남한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경제·재무교육 등을 실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함

다. 세부사업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한 사회통합과 사회참여의 동기를 부여함
- 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이탈청소년은 학제의 차이, 학과 내용의 차이 등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사업개요
  - 학교밖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반을 운영함
  - 북한과의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멘토링을 통해 학업을 지도하고 상담을 지원함
  - 신성대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시장경제의 경험과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계약사기 등 경제생활 관련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
-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여건, 노동기본권, 인권 등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근로현장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노동법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올바른 권리의식을 고취함
- 고용주 또한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노동 인권인식을 제고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8. 이주노동자

가. 실태 및 문제점

▌언어·문화의 차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한국사회 적응 미흡

- 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의 경우, 언어문제, 정보부재로 인해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의사소통의 문제로 직장내에서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음

▌열악한 기본적인 생활환경

- 콘테이너기숙사, 비닐하우스(농촌의 경우)에서 숙박하여 난방, 온수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생활상의 불편함과 더불어 취약한 경비도 문제가 되고 있음

▌언어로 인한 건강권 침해

-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병원·보건소 등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언어폭력 및 성희롱

- 직장에서 상시적으로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성희롱·폭력에도 시달리는 경우도 있음

▌부당한 처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임금체불, 산재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인권사각지대 상존

-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불법으로 분류되어 건강·교육·노동 등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나. 기본방향

▌ 인간다운 거주환경 지원

- 비인간적인 숙소, 생활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함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산재 등 정당한 권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

다. 세부사업

▌ 이주노동자 의료검진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에는 2018년 6월 현재 5,42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지만, 직장사정상 많이 아프지 않으면, 주중 근무시간에 병원방문치료를 받기 어려움
- 사업개요
  -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주관업체로 지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접수창구 역할을 담당함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	10	10	10	10	10	
국 비							
도비							
시 비	50	10	10	10	10	10	

9. 기타

1) 범죄피해자

가. 실태 및 문제점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미비

- 범죄피해자와가 그 가족 가운데 범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인권의식이 고양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당진시 지역에 대한 서비스 미흡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서산시에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당진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 의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센터는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생계비·학자금을 지원하고, 심리·법률상담, 신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센터가 서산시에 위치하여 당진시의 범죄피해자의 이용이 낮고, 1인당 지원예산이 미비하여 당진시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취약한 상태임

나. 기본방향

▌『(가칭)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원거버넌스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과 당진시, 시민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

2) 감정노동자

가. 실태 및 문제점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증가

- 복지·인권시설에 근무하는 시설근로자는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감정노동자”에 해당함
-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동반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첨가되었음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 복지시설에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봉사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선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됨
- 감정노동자의 사기진작은 곧 복지시설 재소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설재소자 인권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

나. 기본방향

▌시설근로자 사기진작

- 시설근로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취약계층과 시설근로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시설근로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함

▌감정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2. 인권제도 정비

가. 인권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시기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들의 관심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의 영역이 더 다양화해지고, SNS와 같이 매체를 통해 시민들간의 관계도 점점 더 긴밀해지면서 인권영역도 더욱 전문적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음
- 인권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감수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인권은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주체들의 상호간 협력을 통해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협력체계가 중요함
- 따라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인권문제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도 더해지고 있음

▌ 운영시기

- 당진시의 인권수요와 행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나. 당진시 인권조직운영(안)

1) 조직운영(안)

>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1안 - 단기적 운영(안) : 전담 담당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당진시는 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인권을 새롭게 시정에 도입하는 단계임. 또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 그리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보다는 자치행정과의 팀 단위에서 관련 주무관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무리한 조직 확장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인권부서는 인권정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타 부서, 인권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인권사업을 추진할 필요
- 조직운영방안
  -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전담인력 배치
  - 1명으로 조직 구성
- 주요업무
  - 인권정책수립 및 운영
    - · 인권정책 수립, 시행 및 모니터링
    -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 인권실태 조사
    - · 인권교육을 실시
    - · 인권위원회 운영
    - · 인권 문화행사 운영(인권 주간 등)
  - 인권협력
    - · (가칭)당진시인권센터 지원
    - · 인권행정협력 네트워크 지원

▌2안 - 장기적 운영(안) : 팀제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정착되고,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이 시정의 구심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팀(담당) 수준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이루어야 함
- 조직운영방안
  - 자치행정과내 1개 인권전담팀 운영
- 주요업무
  -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본격 추진
  -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의 시각에서 시정을 추진

2) 세부사업

▌인권실태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의 특성상을 반영하여 인권침해가 실태 파악이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매년 당진시 특정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 실태조사 실시
  - 인권 관련 기관·위원회를 통해 진정된 사안에 대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비							
시 비	100	20	20	20	20	20	

▌인권 문화홍보행사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보호는 인권의식이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시민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행사가 없음
  - 인권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실시
- 사업내용
  - 당진시 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 교육청, 유관기관,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비							
시 비	100	20	20	20	20	20	

▌(가칭)당진시인권센터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 조직적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
  -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밖의 독립적인 인권추진기관이 필요함
- 사업개요
  - 당진시는 (가칭)당진시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
  - (가칭)당진시인권센터는 당진시의 전반적인 인권교육기능과 지역 인권거버넌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00						700
국 비							
도비							
시 비	700						700

▌ 인권감수성 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권 증진방법임

• 사업내용

- 인권취약계층, 당진시민, 시설종사자·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 당진시교육지청, 충남인권센터 등과 연계하여 인권감수성교육을 추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5	5	5	5	5	5	
국 비							
도비							
시 비	25	5	5	5	5	5	

다. 당진시 인권거버넌스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취약계층별 전문센터의 공통적인 기능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증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권영역이 다양해질수록 인권행정에서 인권전문영역이 확대됨. 향후 인권은 더욱 인권전문가에 의해 조사, 구제될 필요가 있음

• 인권문제 해결은 당진시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국적 인권연대를 통해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1) 운영(안)

▌1안(단기안)

• 구성형태

- 인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지원(민~관협력체계)
- 당진시 인권관련 기관, 충남인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당진시는 인권사업을 추진

• 당진시인권위원회

- 현 당진시 인권취약계층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거버넌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자치행정과 시정팀 등에서 인권침해사항을 접수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관련기관에 상담, 조정 및 구제를 의뢰
- 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관계기관에 권고
- 당진시 인권강사 pool을 구축하고, 인권교육네트워크를 구성
- 당진시는 충남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인권감수성교육을 실시

• 당진시 인권관련 기관 및 센터

- 당진시 인권관련 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북한

이탈주민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성통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는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분야별 인권침해사항을 조사·접수, 상담, 구제를 실시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 관련 기관·시민단체·전문가는 당진시 취약계층별 인권개선·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제안
- 당진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인권활동을 전개

• 충남인권센터, 충남 기초자치단체 인권센터

- 당진시 인권위원회는 충남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충남차원에서의 인권문화확산을 위해 충남인권센터와 연대
- 당진시는 아산시 인권센터 등 지역 인권센터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함

• 당진시 시민단체

-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활동을 전개하는 당진시 YMCA 등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함

▌2안(장기안) : (가칭)당진시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 배경 및 필요성

- 당진시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 조직적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
-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밖의 독립적인 인권추진기관이 필요함

• 사업개요

- 당진시는 (가칭)당진시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
- (가칭)당진시인권센터는 당진시의 전반적인 인권교육기능과 지역 인권거버넌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 인권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라. (가칭)당진시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1) 배경 및 목적

- 당진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추진체 구성 필요
- 당진시의 인권정책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상시 기구 필요
- 행정기관(국가권력)과 독립된 민간 주도의 인권기구가 필요

2) 구성형태

- (가칭)당진시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당진시 인권거버넌스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
- 당진시는 (가칭)당진시인권센터를 지원하고, 양자는 협력관계를 유지
- (가칭)당진시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와 협의관계를 형성
- (가칭)당진시인권센터는 충남도인권센터, 충남 시군인권센터, 대전 인권사무소, 시민사회와의 민~민네트워크를 구성

3) 인권센터의 역할

- 시민의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상담, 조사, 권고 등의 효과적 대응함
-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관련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함
- 행정기관의 밖에서 인권의 시각에서 행정기관을 평가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함
- 당진시의 인권감수성교육을 전담할 상설기구로서의 역할 담당함
- 당진시 인권관련단체·기관과의 연계체계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함
- 당진시 인권증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함

4) (가칭)당진시 인권센터의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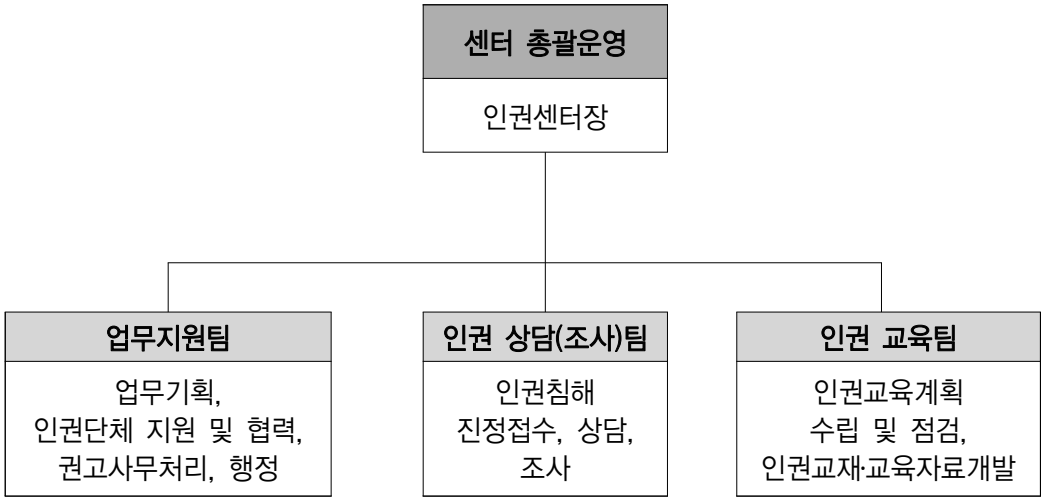

5) (가칭)당진시 인권센터의 운영방식

- (가칭)당진시 인권센터의 운영방식은 외부 위탁방식과 자체운영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조직운영 및 예산운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권전담부서의 운영방식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외부기관 위탁 방식

- 현재 당진시의 경우 인권전담조직이 없고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인권센터 설립시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당진시에서 인권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센터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당진시의 관련부서는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 장점
  - 당진시 인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 행정권력에 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인 시각에서 해결 가능

- 단점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력·책임성에 한계가 있음
  - 위탁비용 등 운영비 등이 증가함
  - 관련 기관 간 사업추진상의 갈등이 발생시 조정기능이 미흡함

▌시 자체 조직운영 방식

- 당진시의 인권전담조직을 팀수준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계획과 집행, 추진 등 모든 인권관련 정책을 전담조직에서 추진하는 방식임
- 장점
  - 강력한 인권정책 추진과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
  - 자체 사업추진을 통한 운영비의 감소
  - 부수적으로 인권에 대한 대외적 정책마케팅 효과
- 단점
  - 인권침해 관련 문제해결에 있어 전문성 부족
  - 행정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견제가 미흡함
  -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상호교류 공간이 부재

제5장 재정계획

제1절 재정계획

1. 재정계획

가. 총 투자

▌ 연차별 투자계획

- 계획기간 중 투자예산은 총 1,950백만원임
- 2019년에는 244백만원(12.1%), 2020년에는 264백만원(13.3%), 2021년에는 244백만원(12.1%), 2022년에는 254백만원(12.6%), 2023년에는 244백만원(12.1%), 2024년 이후에는 700백만원(37.8%)임

▌ 재원별 투자계획

- 계획기간 중 재원별 투자예산은 모두 시비로 1,950백만원(100.0%)임

▌ 부문별 투자계획

- 노인부문 125백만원(6.8%), 장애인부문 50백만원(2.7%), 여성부문 425백만원(17.6%), 다문화부문 150백만원(8.1%), 아동·청소년부문 55백만원(3.0%), 비정규직부문 95백만원(5.1%), 북한이탈주민부분 75백만원(4.1%), 이주노동자부문 50백만원(2.7%), 인권제도정비 부분 925백만원(49.9%)임

나.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			5			5			5			5			5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5			5			5			5			5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			5			5			5			5			5			
독거 노인 문화지원사업			5			5			5			5			5			
독거 노인 생활안전시설 설치			5			5			5			5			5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5			5			5			5			5			
학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5			5			5			5			
불법 노상적치물 점검																		
편의시설 모니터링																		
양성평등 캠페인			5			5			5			5			5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 피해자 여성장애인 교육·상담 지원			10			10			10			10			10			
여성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동료상담' 지원			50			50			50			50			50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10			10			10			10			10			
여성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10			10			10			10			10			
다문화가정 청소년 공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10			10			10			10			10			
다문화 아동 멘토링			20			20			20			20			20			
다문화 정보교류 사이버공간 구축																		
장애·다문화·학교밖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모니터링						10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			5			5						10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10			5			5			5			
영세 사업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5			5			5			5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2			2			2			2			2			
청년창업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5			5			5			5			5			
노동인권 보장 우수 업체 선정 및 홍보																		
비정규직의 인권침해 대응 네트워크 구축			2			2			2			2			2			
산업재해예방 위원회 설립 및 산재예방교육			5			5			5			5			5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5			5			5			5			5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지원			5			5			5			5			5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5			5			5			5			5			
이주노동자 의료검진			10			10			10			10			10			
인권실태조사			20			20			20			20			20			
인권 문화홍보행사			20			20			20			20			20			
인권감수성 교육			5			5			5			5			5			
(가칭)당진시 인권센터 설립																		700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총괄 장애인인권, 북한이탈주민인권

□ 내부 연구진

고승희	연구위원	아동ㆍ청소년인권
사공정희	책임연구원	여성ㆍ영유아, 다문화인권
최웅선	책임연구원	비정규직인권
장창석	전문연구원	노인인권
신혜지	연구원	현황 및 실태
임다정	연구원	현황 및 실태